

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의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 등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과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1184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전자제품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을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4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별표 7과 같다”를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말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 제3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확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무선공유기

카. 연수기

고.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별표 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는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으로서 별표 1로 정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별표 7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제1항	2,000	2,500	3,000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1. 냉장고: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냉온수기·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5. 제습기: 공기 중의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6.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7.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데스크톱형·노트북형·랩톱(lap top)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8.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성 항법장치로 지도 안내를 통해 길 찾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9.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컬러식·양화(diazo)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복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0.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와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잉크젯·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1.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프린터·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2.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내장된 감지기로 이미지 또는 문서 등을 디지털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3.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브라운관, 디지털광원처리(DLP) 등 빛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나 동영상 이미지 등을 화면으로 영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4. 유무선공유기: 유선·무선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5.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6.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세탁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7.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복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18.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음식물처리기: 건조식·분쇄식·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처리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0.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소독·살균·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1. 전기비데: 욕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2.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3.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4.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전축·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5.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6. 연수기: 경수(센물)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단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7. 가습기: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8.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섬유의 구겨진 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29.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0.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1.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2.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3. 토스트기: 전기를 이용하여 식빵 등 빵을 굽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4. 전기주전자: 마실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를 이용한 자체 가열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5. 전기온수기: 저장식·순간식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전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6. 전기프라이팬: 팬에 전열체가 붙어 있으며 가열장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7. 헤어드라이어: 모발의 수분을 말리기 위하여 차갑거나 따뜻한 공기를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38. 러닝머신: 실내에서 달리기와 걷기를 위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전동모터의 힘으로 고무 롤러를 돌리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9. 감시카메라: 그 형태 및 기능 등과 관계없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구성하는 카메라로 녹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0. 식품건조기: 열풍(熱風), 적외선, 고주파 등의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1. 전기안마기: 지압봉을 전동으로 움직여 신체의 부위를 마사지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2. 족욕기: 물을 따뜻하게 가열하여 발을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3. 재봉틀: 천이나 가죽 등을 실로 엮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4.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비디오 출력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5. 제빵기: 빵이나 발효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반죽, 발효, 굽기 등의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6. 튀김기: 기름을 가열하거나 기름 없이 열풍을 이용하는 등 그 방식에 관계없이 식품을 튀기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7. 커피메이커: 분쇄된 원두가루 등을 여과지 등에 담아 넣고 끓는 물이 떨어지게 하여 커피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8. 약탕기: 물과 함께 약재를 가열하여 달이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49. 탈수기: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세탁물의 수분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전자제품

## 비고

이 표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은 직류(DC) 1,500V 이하 또는 교류(AC)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 1. 전기·전자제품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폴리브롬화비페닐	
마.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아. 디부틸프탈레이트(DBP)	
자.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차. 카드뮴	

## 2. 자동차

종류	함유기준
가.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이하
나. 수은	
다. 육가크롬	
라.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이하

## 비고

“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 등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 [별표 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 1. 전기·전자제품

## 가. 납

- 1) 형광튜브 유리에 함유된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다)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라) 동합금(銅合金)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 3) 고온에서 녹는 땀납[solders: 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lead-based alloys)]에 함유된 납

- 4) 전자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가) 축전기(capacitors) 내 비유전체(非誘電體) 세라믹 또는 유리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부품[예: 압전(壓電) 전자 장치(piezoelectronic devices),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
  - 나)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이상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 다)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spare parts)으로 한정한다.
  - 라)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나 독립된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s)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에 함유된 납
- 5)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C-press compliant pin connector system) 등에 사용되는 납
  - 가)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나)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외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열전도 모듈 시링(thermal conduction module C-ring)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7) 광학유리 및 필터유리에 사용되는 납
  - 가) 광학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된 백(白)유리에 함유된 납
  - 나) 이온 착색된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에 함유된 납
- 8)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는 뿔납(중량기준 80% 이상 85% 미만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9)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플립 칩(flip chip) 패키지] 내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반송자(carrier)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 10) 비에스피[BSP(BaSi<sub>2</sub>O<sub>5</sub>: 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의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기준 1% 이하)
- 11)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납
- 12) 0.65mm 이하인 연결자(connectors)를 제외한 미세 피치(pitch) 부품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 13) 원반형 및 평면형 배열(array) 세라믹 적층 축전기의 구멍을 통하여 기계를 납땜(soldering)하기 위한 뿔납에 함유된 납
- 14) 난방, 환기, 공조 및 냉각(HVAC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적용을 위한 냉매 포함 압축기(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셸(bearing shells, 베어링의 외각 부분)과 부시류(bushes, 절연체류)에 함유된 납
- 15) 크리스털유리에 함유된 납
- 16)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저 튜브의 유리 판막 조립(window assemblies)에 사용되는 봉합 프릿(seal frit)에 함유된 산화납

- 17) 도성합금(陶性合金)을 기반으로 한 트리머 퍼텐쇼미터(cermet-based trimmer potentiometer)에 함유된 납
- 18) 아연붕산염 유리체를 기본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high voltage diodes)의 평판층에 함유된 납
- 19) 연소 엔진의 실린더 또는 크랭크케이스 내외부에 직접 장착된 점화모듈에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 20) 전기·전자 엔진 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의 내외부 마감재에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 나. 수은

- 1)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덮개가 씌워진(컴팩트형)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 가) 일반전구용 30W 미만: 2.5mg
- 나) 일반전구용 30W 이상 50W 미만: 3.5mg
- 다) 일반전구용 50W 이상 150W 미만: 5mg
- 라) 일반전구용 150W 이상: 15mg
- 마) 일반전구용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튜브 지름 17mm 이하: 7mg
- 바) 특수용도용: 5mg

- 2)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

- 가)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중덮개가 씌워진 일반용 직선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 (1)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tri-band phosphor) 및 튜브 지름 9mm 미만(예: T2): 4mg
- (2)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9mm 이상 17mm 이하(예: T5): 3mg
- (3)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17mm 초과 28mm 이하(예: T8): 3.5mg
- (4)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28mm 초과(예: T12): 3.5mg
- (5) 긴 수명(25,000시간 이상)의 3파장 인광체: 5mg

- 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형광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 (1) 튜브 지름 17mm 초과인 비직선형 3파장 인광체 램프(예: T9): 15mg
- (2) 그 밖의 유형의 일반용 또는 특수용 램프(예: 유도전구): 15mg

- 3)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특수용 냉음극형 형광램프(CCFL: cold cathode fluorescent lamps)와 외부전극형 형광램프(EEFL: 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s) 등에 함유된 수은

- 가) 짧은 길이(500mm 이하): 3.5mg
- 나) 중간 길이(500mm 초과 1,500mm 이하): 5mg
- 다) 긴 길이(1,500mm 초과): 13mg

-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램프에 함유된 수은

- 가) 저압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램프 1개당): 15mg
- 나) 일반용으로서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고 연색성 지수(colour rendering index)가 60Ra를 초과하는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 (1)  $P \leq 155 \text{ W}$ : 30mg
- (2)  $155 \text{ W} < P \leq 405 \text{ W}$ : 40mg
- (3)  $P > 405 \text{ W}$ : 40mg



다) 그 밖에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용 고압나트륨(증기) 램프에 함유된 수은(버너 1개당)

(1)  $P \leq 155$  W: 25mg

(2)  $155$  W <  $P \leq 405$  W: 30mg

(3)  $P > 405$  W: 40mg

라) 메탈할라이드 램프(MH)에 함유된 수은

마) 그 밖의 특수용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 다. 육가크롬

냉각액(cooling solution)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육가크롬

#### 라. 카드뮴

1) 전기접촉용 및 도금용 도료의 카드뮴과 그 화합물

가) 원샷펠릿(one shot pellet) 타입의 열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으로 한정한다.

나) 전기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열처리(striking) 광학필터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되는 유리에 함유된 카드뮴

3)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카드뮴

#### 마.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및 카드뮴

1)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된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사.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 함유된 납, 수은, 육가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카드뮴

#### 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 2. 자동차

### 가. 납

1)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가공 목적의 철과 아연도금 철

(1)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비연속식 용융아연도금 강(batch hot dip 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연속 아연도금강판(continuously galvanized steel sheet)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

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다) 엔진, 변속기, 공조 압축기(air conditio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셀에 함유된 납: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라) 구리합금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부품에 함유된 납과 납 혼합물

가) 축전지(batteries)에 함유된 납: 직류 75V 이상의 고전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축전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진동감쇄장치(vibration dampers):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다) 동력전달계통용 고무류(powertrain elastomers)의 접착제에 함유된 중량기준 0.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라) 전자회로기판에 전기 또는 전자부품을 접합하는 뿔납에 함유된 납과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가 아닌 부품, 부품 핀 및 전자회로기판에 적용하는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마) 전기회로기판 또는 유리의 납땀이 아닌 다른 전기적 용도로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전해질 알루미늄 축전기의 터미널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사) 대량 기류감지기(mass airflow sensors)의 유리 납땀에 사용되는 납: 2015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아) 고 용융점 뿔납(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자)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함유된 납: 차량 하네스 커넥터 결합부에 함유된 납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차)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 내 반도체 다이를 반송자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 카) 전력 반도체 어셈블리(assembly)에서 열분산기(heat spreader)를 방열체(heat sink)와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실리콘 칩의 투시면적이  $1\text{cm}^2$  이상, 명목 전류 밀도가 단위 실리콘 칩 면적( $\text{mm}^2$ )당 1A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타) 접합유리(laminated glazings)의 납땀이 아닌 경우로서 유리부품에 전기장치(electrical glazing applications)를 접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파) 접합유리의 납땀에 사용되는 뿔납에 함유된 납
- (1) 접합유리용 두께 2.1mm 이하의 단일 판유리(single panes)에 열전류 0.5A 이상의 발열장치(heating applications)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땀하는 경우[중간체 폴리머(intermediate polymer)와 맞는 부분의 납땀의 경우는 제외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하) 다음의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 다만, 전구용 유리나 점화플러그용 유약 또는 거)부터 더)까지의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은 제외한다.
- (1) 유리 또는 세라믹
  - (2) 유리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 matrix compound)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ceramic matrix compound)
  - (3) 유리-세라믹 재료(glass-ceramic material)
  - (4) 유리-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ceramic matrix compound)
- 거) 집적회로나 독립된 반도체의 일부인 축전기용으로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에 함유된 납
- 너) 정격전압 교류 125V 또는 직류 250V 미만의 축전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더) 초음파탐지시스템(ultrasonic sonar systems) 내 감지기의 온도편차를 보정하는 축전기의 유전체 세라믹 재료에 함유된 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러) 배기열 회수를 통한 이산화탄소( $\text{CO}_2$ ) 저감 목적의 자동차용 열전(熱電) 재료에 함유된 납: 2019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나. 수은

- 1) 전조등에 사용되는 방전램프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2) 계기판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형광튜브에 함유된 수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다. 육가크롬

냉각액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냉각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캠핑용 차량의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육가크롬(환경, 보건 및 소비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카드뮴

전기자동차용 축전지에 함유된 카드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마. 납, 수은, 육가크롬 및 카드뮴

-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 2)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으로서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자동차의 수리에도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한정한다.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의 생활환경 안전의 유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자동판매기 등 23종의 제품을 추가하고, 국제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하는 한편,

폐전기·전자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서 제외되는 제품에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118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인근 마을로의 이전”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각각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11까지로 하고,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소재지, 상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 2. 상호
- 3. 대표자
- 4. 기술인력

③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4(중전의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5(중전의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3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